

제 8 장 보 칙

제 40 조(법인해산) ①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본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도록 한다.

제 41 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42 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